

수원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3가합209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7. 24.

판결 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77,401원 및 그 중 100,877,205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2008. 12.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2. 16.부터 2009. 12.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와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이후 2010. 12. 15. D는 연대보증을 면제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이 연대입보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1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 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

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상환범위)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12. 16. 피고 회사에 보증서번호E,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2. 15.(이후 2013. 12. 13.로 연장)로 된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100,000,000원을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13. 7. 2.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에 대한 원금연체로 위 재단이 2013. 7. 26. 부실처리 하는 등 2013. 8. 1. 이 사건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위은행은 2013.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8. 20. 우리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의한 원리금 합계 101,475,835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598,6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00,877,205원(= 101,475,835원 -598,630원)이다.

5)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관하여 정한 율은 연12%이고,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회수한 원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회수일까지 위 연체이율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 196원(= 598,630원 × 연 12% × 1/365)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00,877,401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100,877,205원 + 확정지연손해금 196원) 100,877,20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날인 2015. 1. 24.까지는 약정된 연체이율인 연 12%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김정성, 판사 전명재